

세금우대 종합저축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세금우대 종합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 약관,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저축 등의 개별약관에 따른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인 자도 가입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3조 (가입대상저축)

이 저축은 은행이 취급하는 1년 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 금전신탁, 수익증권, 채권저축 (이하 '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세금우대 요건)

- ① 예금 가입당시 거래처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예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양도·양수시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 각자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거래한도)

- ① 이 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자, 제2조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우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 ② 제 1항의 거래한도는 다음 기준에 의해 정한다. 이 경우 원가금액은 제외하고 한도를 산정하며, 저축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를 기준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1. 거치식예금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한다
 2. 정액(정기)적립식 예금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유적립식 및 추가 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거래한도 변경)

거래처가 제5조 2항 3호의 거래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세금우대 처리)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

제8조 (표시방법)

은행은 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내지·거래내역서 등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적용이율)

이 저축으로 가입하는 각 예금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특별중도해지)

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으로 거래 하더라도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② 제 1항 각 호의 1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정보제공)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별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 할 때에는 거래처(수익자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